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1998년 12월 17일
- 나. 제출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 1998년 12월 17일
- 라. 상정일자 : 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1998년 12월 23일)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정호문)

가. 제안 사유

-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제도화하고,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지도 및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공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코자 함

나. 주요 내용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해 필요하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안 제1조)
-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등 10개항의 활동 범위 규정(안 제2조)
- 9인의 위원과 1인의 간사로 구성되며,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 시책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규정(제4조)

-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하며, 직영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제6조)
- 위탁 운영 할 경우 보조금과 공유재산의 사용 및 결산, 운영상황 보고, 감독 및 조례 위반 등 위탁해지 사유 규정(제6조~제13조)
-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배치와 활동 사항 규정(제13, 14조)
-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 등에 대한 실비보상 및 대비책 규정(제16조)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증서 교부 및 포상 규정(제17조)

※ 총 18조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재천)

- 자원봉사활동은 민간부문에 있어 종교단체, 민간단체, 개인 등의 참여가 계속늘어나고 있으나 활동이 체계적으로 미흡하고 활동영역에 있어서 다양화 해야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음.
- 자원봉사 활동은 행정의 담당할 주민생활의 복지문제 등에 민간부문의 여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사회, 가정에 큰 기여를 한다고 봄.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각 부문과 제공하는 사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운영코자 하는 방안으로 직영 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격상 민간전문 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바람직하나 재원문제와 잉여인력 활용, 전문성을 살리는 업무특성 등을 비교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시책 사업계획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원봉사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전문인력 활용방안, 봉사활동전개, 민간단체와의 연계활동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 되어야 할 것임.
-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 제정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와 조직화를 통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문과 자원봉사자간의 체계적인 연계를 해줌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민복지증진,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제도적 뒷받침이라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사항 : 없음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1998년 12월 22일

제안자 : 김선옥 의원 외 5인

■ 수정이유

- 운영위원회의 구성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주요골자

- 제4조제3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 제4조제4항에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

광주광역시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광주광역시서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③항 중 “부구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④항 중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3명, 구의회 의원 1명”을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한다.

신 · 구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p> <p>① · ② (생략)</p> <p>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u>부구청장이 된다.</u></p> <p>④위원회는 <u>부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3명, 구의회 의원 1명,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학자나 민간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민간인 5명을 구성하며</u>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구의회 의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p> <p>⑤ (생략)</p>	<p>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④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원 2명,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학자나 민간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민간인 5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구의회 의원은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조사·연구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제도화하고,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지도·조정 및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체 의식함양 및 공동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기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 3 조(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배치 및 교육사업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자료 수집과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
5.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6.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사업
7.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 4 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자원봉사센터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 시책, 사업계획, 봉사단체의 지원·육성 및 기타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3명, 구의회의원 1명, 자원봉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학자나 민간단체대표 등을 포함한 민간인 5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구의회의원은 구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자원봉사센터의 책임자가 이를 겸임한다.

제 5 조 (수당, 여비 등)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의 출석 및 자원봉사사업활동을 위한 출장 등에 있어서 수당,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운영)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할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들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받을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기간, 위탁운영비 등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 7 조(보조금)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8 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탁의 목적에 위배되었을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의 재산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 9 조(사업계획 및 예산)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개시 2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운영상황 보고)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적을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감독)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 14 조(자원봉사자 등록 및 배치) ①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수시로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봉사활동 수요처를 수시로 파악하여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활동하게 하여야 한다.

제 15 조(자원봉사자의 활동) 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의 배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의 수칙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실비 보상 등)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상해를 입거나 타인에게 신체상 혹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하거나 그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 17 조(증서교부 및 포상) ① 구청장 또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연구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 18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